성주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안이유

❍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시행, 분양,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

❍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, 복지시설, 환경위생시설, 조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사업시행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음.

나. 토지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입

다. 조성사업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토지의 매입비, 보상비, 공사비, 부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

라.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시행할 수 있음

마.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3조)

○ 기능 : 보상 및 이주대책, 입주기업체, 분양가격,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심의

○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(임기2년)

바. 분양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 ~ 제24조)

○ 분양용지 :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, 지원 시설용지 등

○ 입주자격 : 입주허용 업종이면서 사업의 인허가 및 등록을 받았거나 자격이 있는 업체

○ 분양가격 :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

○ 분양계약 :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대금의 10%의 계약보증금 납부토록 규정

사.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○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, 운영,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
아.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)

○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

4. 관계법령

○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는 대규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 시행, 분양,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, 산업단지내 기반시설, 복지시설, 환경위생시설, 조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 관리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코자 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,

○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「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」에 합당하여 본 조례를 제정,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안이유

○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「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)

○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, 사업선수금, 일반회계 전입금, 국비보조금, 지방채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함

나.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
○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,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, 공공시설 건설비용,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,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정함.

다. 예비비 (안 제4조)

○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

라.준용규정 (안 제5조)

○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

4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 제2항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는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정조례로서,

○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합목적성을 갖추었으며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에 합당하여 본 조례를 제정,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